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 추가 등〉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31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6.
3. 회부연월일 : 2025. 12.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3호가목), 부정취득한 당사자의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에게 누설행위,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의 내용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가. <u>해킹, 절취</u> ----- ----- ----- ----- ----- ----- -----
나. ~ 바. (생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8조(벌칙) ① -----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절취·기망·협박</u>,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u>취득하거나 사용</u>(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u>사용</u>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해킹·절취</u>-----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3. -----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사용 또는 공개는----- ②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상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인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규율 중이나, 최근 해킹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신종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¹⁾²⁾,

1) 조선일보, “SKT 가입 전원 털려... 3년 前부터 해킹 공격”, 2025.5.20.

2) 최근 5년간 해킹에 의한 자료 유출 및 자료 훼손 피해 현황

구 분		'19	'20	'21	'22	'23	합계(건)
해킹	자료유출	114	130	110	103	172	629
	자료훼손	341	358	248	216	223	1,386

자료: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개정안은 다변화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수단에 해킹을 추가하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부정취득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선, 안 제2조제3호가목은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의 수단에 “해킹”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의 수단을 “절취·기망·협박 및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킹은 해석상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른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효과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정보를 획득하는 부정한 방법의 예시로 “해킹”을 규정하고 있고³⁾, 해외 입법례를 보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본⁴⁾ 및 미국⁵⁾의 관련 법률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18조제1항제2호는 해킹·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항 제3호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당사자 아닌 전득자가 부정한 수단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서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처벌 대상 확대)

별칙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제1항 제2호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u>취득자가 부정취득 영업비밀 사용</u> <u>취득자가 부정취득 영업비밀 제3자 누설</u>
제18조 제1항 제3호	부정취득 영업비밀 알고서 전득 전득자가 부정취득 사실 알고서 사용	부정취득 영업비밀 알고서 전득 전득자가 부정취득 사실 알고서 사용 <u>전득자가 부정취득 사실 알고서 제3자 누설</u>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4)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기 등 행위(기망,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호에서 같다) 또는 관리 침해행위[재물의 절취, 시설 침입, 부정접속행위{「부정접속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평성 11<1999>년 법률 제128호) 제2조제4항에 따른 부정접속행위를 말한다}, 그 밖의 영업비밀 보유자의 관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호에서 같다]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5) 미국 「연방헌법」 제90장(영업비밀 보호)

§1839. Definition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부정한 수단(improper means)”이란

(A) 절도, 뇌물, 허위 진술, 비밀 유지 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을 유도하는 행위, 전자적·기계적 기타 수단에 의한 산업 스파이 행위를 포함한다.

(B) 다만,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독자적 개발(independent derivation)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취득 방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아직 경미한 반면, 이를 실제로 영업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게 되면 재산상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⁶⁾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취득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실익이 있음.

또한, 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⁷⁾은 부정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의 사용·공개행위와 이를 알고서 전득·사용·공개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정의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6)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5364]

※ 주: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 범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 그 범죄의 결과를 유지·실현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선행 범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말함.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개정안을 통해 하나의 법률 내에서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 간 일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률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한 행위와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참고자료),

유사 취지의 법률간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8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제36조(벌칙)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21조(벌칙) ②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50조(벌칙) ③ 제15조 각 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